

# 신·구조문대비표

## (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유의사항)</p> <p>이 규정에 <u>의한</u> ‘적극행정 면책제도’는 업무수행의 동기 와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2조(유의사항)</p> <p>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4조(정의)</p> <p>1. “적극행정”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“면책”이라 함은 ‘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·비효율·손실 등’(이하 “면책대상행위”라 한다)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규칙」(이하 “감사규칙”이라 한다)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“불이익한 처분요구 등”이라 함은 감사규칙에 따른 신분상 징계요구와 훈계 또는 경고[기관경고를 포함한다, (이하 “징계요구 등”이라 한다)]를 말한다.</p> <p>4. “공무원 등”이라 함은 감사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과 임·직원을 말한다.</p>	<p>제4조(정의)</p> <p>1. ----- <u>이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----- <u>이란</u> -----</p> <p>----- <u>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----- <u>이란</u> -----</p> <p>----- <u>징계, 경고,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.</u> -----</p> <p>4. ----- <u>이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면책대상) 이 규정에 <u>의한</u> 면책대상은 제4조제3호의 '불이익한 처분요구 등'과, 같은 조 제4호의 '공무원 등'이다.</p>	<p>제5조(면책대상)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면책요건) 이 규정에 <u>의한</u>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.</p> <p>1. 공익성 :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<u>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</u></p> <p>2. 타당성 : 법령상의 의무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익증진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</p> <p>3. 투명성 : 의사결정의 목적·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(단,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·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가능)</p>	<p>제6조(면책요건) <u>①</u> 이 규정에 <u>따른</u>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.</p> <p>1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<u>불합리한 규제</u>의 개선, <u>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</u></p> <p>2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<u>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</u></p> <p>3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<u>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</u></p> <p>4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<u>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</u></p> <p><u>②</u>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 4호에서 정한 고의 '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1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<u>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</u></p> <p>2.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<u>충분히 검토하였을 것</u></p> <p>3.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<u>거쳤을 것</u></p> <p>4. 결재권자의 결재를 <u>거쳤을 것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면책제도 안내 등)  감사담당관은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통지하거나, 실지감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하여</u>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면책제도 안내 등)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<u>따라</u> -----  -----.</p>
<p>제11조(심의회 개최 등)  ①~③ 생략  ④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<u>의하여</u> 관리한다</p>	<p>제11조(심의회 개최 등)  ①~③ 생략  ④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<u>따라</u> 관리한다.</p>
<p>제12조(징계양정 통보)  감사담당관이 <u>감사결과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때에는</u> 별지 제2호서식의 '감사결과 처분 예정사항 통보서'(이하 "<u>처분예정통보서</u>"라 한다)를 작성하여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징계양정 통보)  ----- <u>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처분에 대한 비위사항에 대하여</u> -----  <u>"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" '(이하 "조치예정통보서"라 한다)</u>-----  -----.</p>
<p>제13조(면책심사 신청)  ② <u>제12조에 의하여 처분예정통보서를 받은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</u>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 ③ 생략  1. ~3 생략</p>	<p>제13조(면책심사 신청)  ② <u>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는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</u> -----  -----.  ③ 생략  1. ~3 생략  ④ <u>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면책심사 처리)</p> <p>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<u>의한</u>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,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,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면책심사 처리)</p> <p>① -----  ----- <u>따른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<p>제15조(심사의견)</p> <p>2. 감경의견 :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, 제10조에 <u>의한</u>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	<p>제15조(심사의견)</p> <p>2. 감경의견 :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, 제10조에 <u>따른</u>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
<p>제16조(심사결과의 처리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구청장은 심의회가 통보한 심사의견이 면책인 경우, 그 면책 대상자가 징계요구대상자인 때에는 면책처분과 함께 감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<u>의하여</u> '훈계'하거나 제2호에 <u>의하여</u> '경고'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<u>제6호서식에</u>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심사결과의 처리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-----  -----  ----- <u>따라</u> -----  ----- <u>따라</u> -----  -----.</p> <p>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<u>제7호서식에</u>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

## 현 행

[ 별지 제1호서식 ]

### 면책심사신청 안내

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○○○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권자
    -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
      - ※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
    -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
  2. 신청기간 : **처분예정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**
  3. 적극행정 면책요건
    - **공익성** :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권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
    - **타당성** : 법령상의 의무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
    - **투명성** : 의사결정의 목적·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
- ※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
-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
  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을 수수한 경우
  -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  -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
  -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범죄의 경우
  -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
  -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
## 개 정 안

[ 별지 제1호서식 ]

### 면책심사신청 안내

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○○○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권자
    -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
      - ※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
    -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
  2. 신청기간 : **처분지시 이전**
  3. 적극행정 면책요건
    - **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**
    - **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**
    - **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**
    - **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**
- ※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
-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
  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을 수수한 경우
  -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  -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
  -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범죄의 경우
  -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
  -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
[ 별지 제2호서식 ]

감사결과 <b>처분</b> 예정사항 통보서					
수신 :					
발신 :					
소속	직급	성명	비위 요지	<b>처 분</b>	근거 법규
예정사항					
비고 :					

[ 별지 제2호서식 ]

감사결과 <b>조치</b> 예정사항 통보서					
수신 :					
발신 :					
소속	직급	성명	비위 요지	<b>조 치</b>	근거 법규
예정사항					
비고 :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 별지 제3호서식 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면책심사 신청서</b></p> <p>「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신 청 인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심 사 대 상 자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사 명 명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감 연 월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사 일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감 사 자</td> <td style="width: 5%;"></td> </tr> <tr> <td>감 사 지적사항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면책 심사 신청 사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익성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타당성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명성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bottom;">           기관장(또는 감사부서 책임자) 확인 (인)         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</p>	신 청 인					심 사 대 상 자					사 명 명	감 연 월	사 일	감 사 자		감 사 지적사항					면책 심사 신청 사유	공익성				타당성				투명성				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	기관장(또는 감사부서 책임자) 확인 (인)				<p>[ 별지 제3호서식 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면책심사 신청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<u>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</u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</td> </tr> <tr> <td><u>구체적 판단기준 내용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여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첨부서류</td> </tr> <tr> <td><u>1.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2.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3.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4.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가.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나.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다.법령에서 정한 행정절 차를 거쳤을 것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라.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5.기타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padding: 5px;">           ※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 <u>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 제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.</u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부서(기관) 인 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 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명 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padding-top: 10px;">광진구청장 귀하</td> </tr> </table>	<u>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</u>			<u>구체적 판단기준 내용</u>	해당여부	첨부서류	<u>1.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</u>			<u>2.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</u>			<u>3.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</u>			<u>4.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</u>			<u>가.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</u>			<u>나.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</u>			<u>다.법령에서 정한 행정절 차를 거쳤을 것</u>			<u>라.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</u>			<u>5.기타</u>			※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<u>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 제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.</u>					년 월 일	신 청 부서(기관) 인 명	직 명	성 명 (서명 또는 인)	광진구청장 귀하		
신 청 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 사 대 상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명 명	감 연 월	사 일	감 사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사 지적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면책 심사 신청 사유	공익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타당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투명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	기관장(또는 감사부서 책임자) 확인 (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구체적 판단기준 내용</u>	해당여부	첨부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.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2.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3.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4.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가.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나.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다.법령에서 정한 행정절 차를 거쳤을 것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라.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5.기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<u>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 제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.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부서(기관) 인 명	직 명	성 명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광진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현 행

[ 별지 제4호서식 ]

면책심사조서

감 사 기 관 명		감사 연월일	
건 명			
신 청 인			
심 사 대 상 자			
정 계 등 양 정 ( 안 )			
비 위 내 용			
신 청 사 유	공 의 성		
	타 당 성		
	투 명 성		
감 사 담 당 관 검 토 의 견	공 의 성		
	타 당 성		
	투 명 성		
	총 합 의 견		

## 개 정 안

[ 별지 제4호서식 ]

면책심사조서

감 사 부 서 명		감 사 연월일	
건 명			
신 청 인			
심 사 대 상 자			
정 계 양 정 ( 안 )			
비 위 내 용			
신 청 사 유	공 의 성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	
	타 당 성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	
	투 명 성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	
감 사 부 서 책 임 자 검 토 의 견	공 의 성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	
	타 당 성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	
	투 명 성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	
	총 합 의 견	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	
총 합 의 견			